풍 남 항 정 비 공 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4. 11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풍남항은 소형선 계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항내 정온 개선과 항내 매몰 및 항내 수질 악화에 따른 처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사업은 해수면 상승과 태·폭풍의 내습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어항시설의 적기 보강 및 수질개선, 매몰저감을 위한 노후어항 시설 정비로 안전한 수산업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음
-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풍남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 파악 및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시와 운영시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 함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1973. 12 : 지방어항(제2종어항)지정

○ 1991. 03 : 국가어항(제1종어항)지정

○ 1993 : 풍남항 기본시설계획 수립

○ 1994~2004 : 풍남항 기본시설 완공

○ 2004. 01 : 풍남항 정비계획 수립

○ 2014. 09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나. 추진계획

○ 2014. 10.~11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4.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14. 11.~12 : 해역이용협의(예정)

○ 2014. 12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2015. 07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예정)

○ 2015. : 환경영향평가 협의(예정)

1.3 화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항만 의 건설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코자 함

<표 1.3-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혐의요청시기

|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
| 4. 항만의 건설사업 |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 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 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어촌· 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 획의 확정 전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풍남항 정비사업은 「어촌·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외측파제제 290m, 내측파제제 50m, 항내돌제 100m 신설)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의거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 계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음
- 또한 외측파제제 290m, 내측파제제 50m, 항내돌제 100m를 설치할 시 공유수면매립면 적 8.050㎡를 수반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유무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소 대상면적 1만m²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되지 않음

<표 1.3-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 시기

| 구 분 | 행정계획의 종류 | 협의요청시기 |
|------------|----------------------|------------------------|
| 라. 항만의 건설 | 4)「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 | |
| 1 9,009,00 | | 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시설기본계획 | |
| 차. 개간 및 공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
| 수면의 매립 | 률」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 | 22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
| | 본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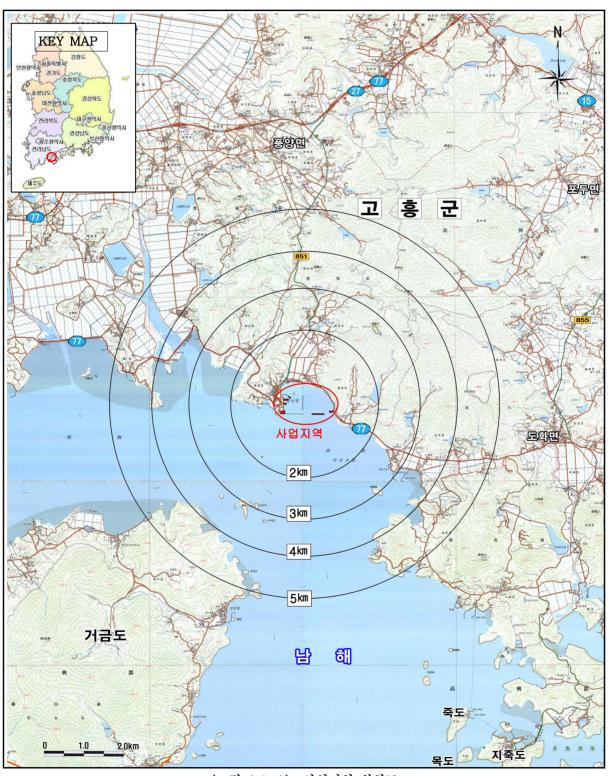
- 비고) 1.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 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 외하다.

 - 가. 계획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 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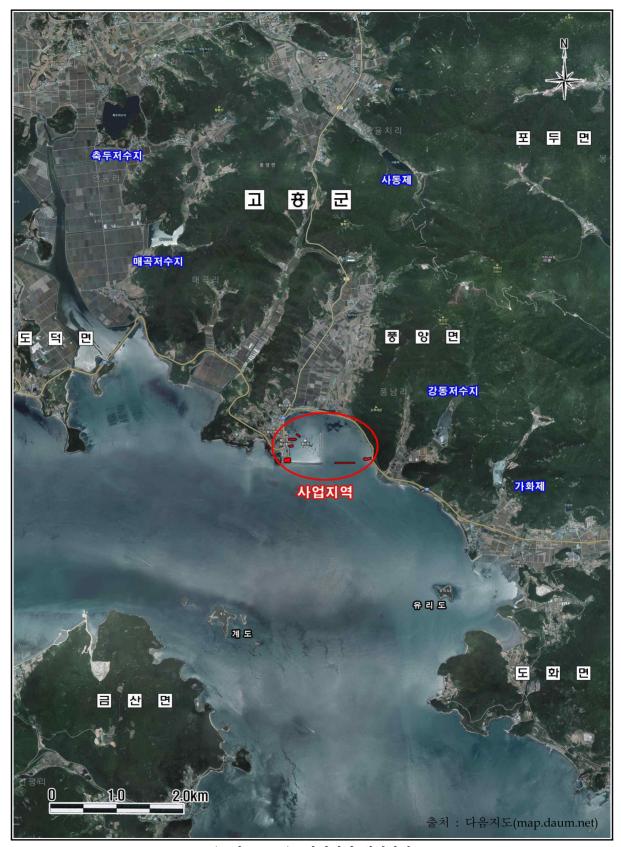
1.4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풍남항 정비공사

나.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1418-17 풍남항 일원



(그림 1.4-1) 사업지역 위치도



(그림 1.4-2) 사업지역 위성사진

다.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

라. 사업 내용

ㅇ 시설개요

| 항 목 | 내 용 |
|----------------|--------------------------------------|
| 외곽시설 | ·외측파제제: 290m ·내측파제제: 50m ·항내돌제: 100m |
| 접안시설 | ·부잔교 1기(30m×14m) |
| 선양장 | ·1식(53m) |
| 준설 및 매립 | ·1식(투기장 확보, 준설 중 오염확산 억제 방안 강구) |
| 해수소통구 | ·1식(방파제 내 설치 위치, 규모 검토 등) |
| 친수시설 및 기타시설 | ·1식(배후부지 내 이용성 고려, 계획 규모 결정) |
| 기존방파제 및 물양장 보강 | ·1식 |
| 선착장 보강 | ·1식 |

ㅇ 공유수면 매립 면적

| 계 | 돌제 | 내측파제제 | 선양장 | 외측파제제 |
|----------|-----------------|--------|----------|-----------------|
| 8,050 m² | 1,000 m² | 150 m² | 5,000 m² | 1,900 m² |

주)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10,000㎡ 이하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3'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그림 1.4-3) 어항시설 현황도



(그림 1.4-4) 사업 평면 계획도

마. 승인기관: 해양수산부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5년간)

사. 사 업 비: 약 300억원

아. 사업의 기대효과

○ 해수면 상승과 태·폭풍의 내습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어항시설의 적기 보강

ㅇ 수질개선, 매몰저감을 위한 노후어항시설 정비로 안전한 수산업기반 조성

ㅇ 어항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 촉진 및 지역주민 고용 증대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제공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2.1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심 의 방 법 : 서면심의

 \circ 심 의 일 시 : 2014. 10. 07 \sim 2014. 10. 24

○ 대 상 사 업 : 풍남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

○ 심의 위원장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 심 의 위 원 : 협의기관(환경부) 등 9명

| 구 분 | 소속 / 부서 | 직위(직급) | 성 명 | 비고 | |
|-----|--------------------|--------|-----|-----------|--|
| 위원장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과 장 | 권준영 | 소이기키 | |
|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어항정책담당 | 문용근 | 승인기관 | |
| |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 담 당 | 김기용 | 협의기관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맹준호 | 관련 전문가 |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연구위원 | 엄기혁 | | |
| 위원 | (주)세광종합기술단 | 전 무 | 김한선 | | |
| | 서해어업관리단 어항건설과 | 과 장 | 박경국 | 소속기관 | |
| | 전라남도 도민소통실 | 담 당 | 양연재 | 지자체 | |
| | 고흥군청 환경산림과 | 담 당 | 송진봉 | | |
| | 고흥군 풍양면 서풍어촌계 | 어촌계장 | 김동만 | 지역대표 | |

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경위

- 2014. 10. 2 : 평가준비서 제출 및 심의요청(서해어업관리단→해양수산부)
- 2014. 10. 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의견 요청(해양수산부 →심의위원)
- 2014. 10. 7 ~ 10. 24 : 서면심의 의견 수렴

2.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 (총괄)

| 이이대 | 평가대상지역 | | | 평가항목 및 범위 | | | 주민의견수렴 생략여부 | | 약식평가 신청 가능여부 | | | |
|-----|--------|-----|----|-----------|-----|----|----------------|----|-----------------|----|----|----|
| 위원명 | 적정 | 부적정 | 기타 | 적정 | 부적정 | 기타 | 가능 | 불가 | 기타 | 가능 | 불가 | 기타 |
| 김기용 | | | О | | | Ο | | О | | | 0 | |
| 맹준호 | | | О | | | 0 | | О | | | О | |
| 엄기혁 | | | О | | | Ο | | О | | | О | |
| 김한선 | О | | | | | 0 | | О | | | О | |
| 양연재 | О | | | | | Ο | | О | | | О | |
| 송진봉 | О | | | 0 | | | | О | | | О | |
| 김동만 | О | | | | | O | | О | | | | О |
| 총 괄 | 4 | 0 | 3 | 1 | 0 | 6 | 0 | 7 | 0 | 0 | 6 | 1 |

제 3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내용

3.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등 제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대상지역을 검토하여 설정하였음
- 해양동·식물상, 해양환경 평가대상지역 확대의견에 따라 3.0km로 확대
- 대기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은 당초 평가범위와 변경없이 동일함 (거리표시는 사업지역 중심으로부터 거리로 표기함)

<표 3.1-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영향예측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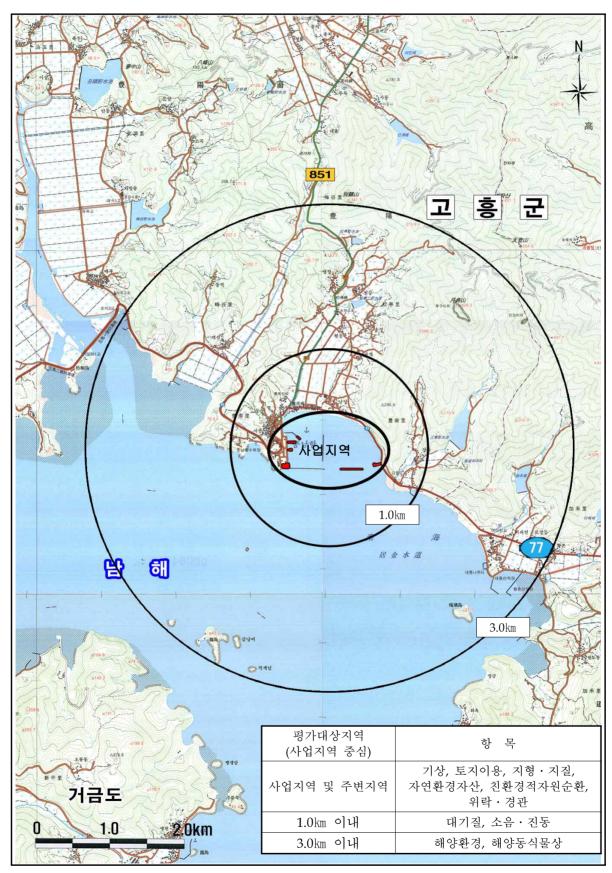
| | 구 분 | 평 가 대 상 지 | 역 | | 비고 | |
|----------------|-------------|-------------------------|---------------|---|------|--|
| 항 목 |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영향예측범위 및 예측방법 | | |
| 자연 생태 환경 | 해양 동·식물상 | ○사업지역 중심으로 부터 반경 3km | 공사시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플랑크톤 및 저서생물, 해조 류, 어란 및 자치어, 조간대 생물, 해산어류 의 영향요인 파악 | 확 대 | |
| 분야 | 자연환경 자산 |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 | 공사시 운영시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 한 자연환경자산의 분포 및 영향 검토 | 변경없음 | |
| 대기 환경 | 기 상 | ○사업지역 인근 고흥관측소 | 2004~ 2013 | ○고흥관측소 기상현황자료 분 석 ○대기질 영향예측을 위한 기 초자료 활용 | 변경없음 | |
| 완경 분야 | 대기질 | ㅇ사업지역 중심으로 부터 반경 1km | 공사시 | ○ 공사장비운영에 따른 PM-10, NO ₂ 항목이 주변지역에 미치 는 영향 예측 | 변경없음 | |
| 수 환경 분야 | 해양환경 | ○사업지역 중심으로 부터 반경 3km | 공사시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수·저 질 영향요인 파악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요인 파악 | 확 대 | |

주)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사업지역 중심으로부터 범위임

<표 계속>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영향예측의 범위

| | 구 분 | 평 가 대 상 지 | 역 | | 비고 | |
|----------|--------------|-------------------------|------------|--------------------------|------|--|
| 항 목 |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영향예측범위 및 예측방법 | | |
| 토지 환경 | 토지이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 변경없음 | |
| 분야 지형・지절 | | ○사업지역 및 인근 해역 | 공사시 | ○지형변화 파악 | 변경없음 | |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방안 | 변경없음 | |
| 생활 환경 | 소음・진동 | ○사업지역 중심으로 부터 반경 1km | 공사시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측 | 변경없음 | |
| 분야 | 위 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의 변화 파악 | 변경없음 | |
| | 경 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 | 변경없음 | |

[~] 주)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사업지역 중심으로부터 범위임



(그림 3.1-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3.2 평가 항목의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71호), 2013.12.27.,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붙임2], 2011.12,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 중점평가항목: 8개항목(해양동·식물상, 대기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 일반평가항목: 3개항목(기상, 자연환경자산, 위락)
 - 평가제외항목: 11개항목(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양, 위생·공중 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표 3.2-1> 환경영향평가항목 설정

| | 구 분 | ΣŽ |]가항- | 목 | 거기(미 교 전) 기 이 | 비고 | |
|---------------------------------------|-------------|----|------|----|--|------|--|
| | 丁 正 | 중점 | 일반 | 제외 | 선정(미포함) 사유 | 비꼬 | |
| 자연 생태 | 해양 동·식물상 | 0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동·식물상 서식환경의 변화 | 변경없음 | |
| · 환경 | 자연환경 자산 | | 0 | | ○사업시행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발생 | 변경없음 | |
| | 기 상 | | 0 | | ○ 기초자료로 활용 | 변경없음 | |
| 대기 | 대기질 | 0 |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온실가 스) 발생 | 변경없음 | |
| 환경 | 온실가스 | | | 0 | ○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은 대기 질 항목에서 예측 | 변경없음 | |
| | 악 취 | | | 0 | ㅇ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유발요인이 없음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수 질 | | | 0 | ○본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어항조성 사업 으로 육상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변경없음 | |
| 환경 | 수리・수문 | | | 0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미미함 | 변경없음 | |
| | 해양환경 | 0 | | | ○사업시행에 따라 인근 해양수·저질, 해양환경에 영향이 예상되어 선정 | 변경없음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항목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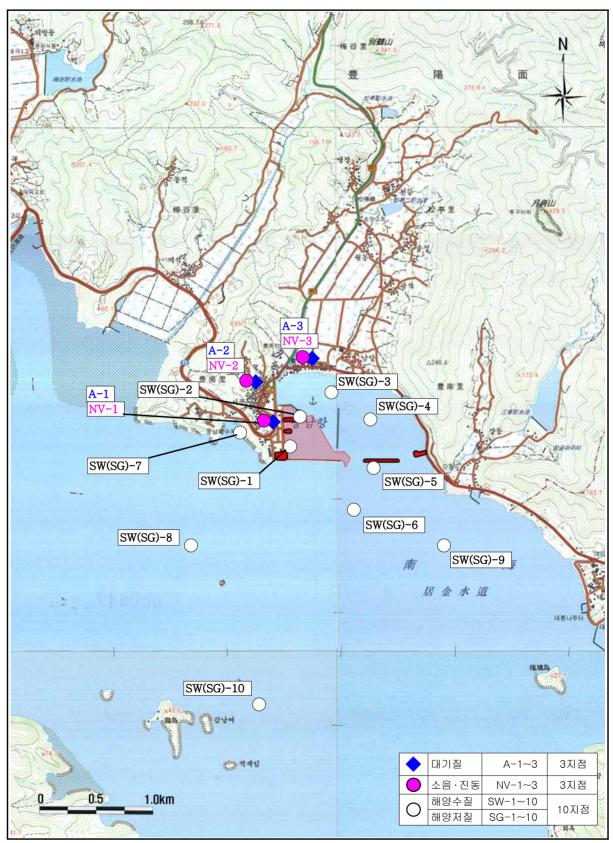
| | 7 H | 평가항목 | | 목 | 기기(미국기) 기 () | n) = | |
|----------|--------------|------|----|----|---|------|--|
| | 구 분 | 중점 | 일반 | 제외 | 선정(미포함) 사유 | 비고 | |
| | 토지이용 | 0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를 파악 | 변경없음 | |
| 토지 환경 | 토 양 | | | 0 | ○본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어항조성 사업 으로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변경없음 | |
| | 지형・지질 | 0 | | |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 ○ 재료원의 확보 | 변경없음 | |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0 | | | ○공사시 장비 및 인력투입으로 폐기물 발생 ○각종 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 | 변경없음 | |
| | 소음・진동 | 0 | | | ○공사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 향이 예상됨 | 변경없음 | |
| | 위 락 | | 0 |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상에 미칠 영향 검토 | 변경없음 | |
| 생활 환경 | 경 관 | 0 | | | ○선양장, 돌제 설치 등 어항정비시설 조성에 따른 경관변화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임 | 변경없음 | |
| | 위생·공중 보건 | | | 0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미미함 | 변경없음 | |
| | 일조장해 | | | 0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유발요인 없음 | 변경없음 | |
| | 전파장해 | | | 0 |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유발요인 없음 | 변경없음 | |
| | 인 구 | | | 0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변화 유발요인 미미함 | 변경없음 | |
| 사회 경제 | 주 거 | | | 0 | ○사업시행에 따른 주거 변화 유발요인 미미함 | 변경없음 | |
| 환경 | 산 업 | | | 0 | ○어항시설 조성으로 인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영향변화가 미미함 | 변경없음 | |

3.3 항목별 현황조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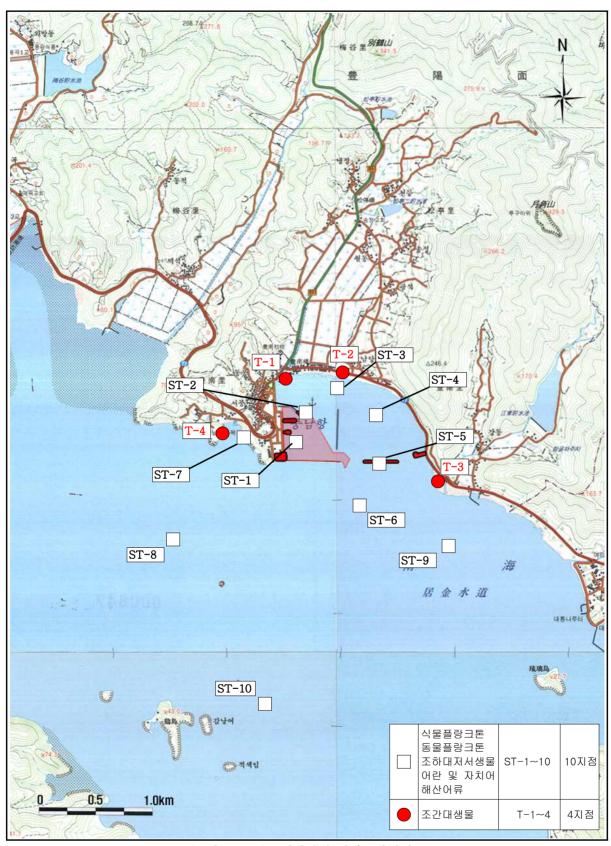
○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본 사업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 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질, 해양수·저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3.3-1> 평가항목 조사계획

| 3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횟수 | 비고 |
|-------------|-------|--|------------------|------|------|
| | 대기질 | SO ₂ , NO ₂ , CO, PM-10, Pb, O ₃ , 벤젠(총 7항목) | 3지점 (1일연속) | 4ই | 변경없음 |
| 환 경 질 | 해양수질 | pH, COD, DO,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T-N, NH ₃ -N, NO ₂ -N, NO ₃ -N, T-P, PO ₄ -P, Cr ⁺⁶ , As, Cd, Pb, Zn, Cu, CN, Hg, PCBs, SPM, 투명도, 수온, 염분, Al, 유기인, TOC, Chl-a(총 28항목) | 10정점 (표충, 저층) | 4회 | 변경 |
| 担 | 해양저질 | As, Cd, Cu, Hg, Pb, Zn, Li,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Ni, Al, Fe, Co, Cr, PAHs, PCBs, 유기인, CN(총 22항목) | 10정점 | 4회 | 변경 |
| | 소음·진동 | 소음 :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 주간 2회, 야간 1회 | 3지점 | 4ই] | 변경없음 |
| 해양 동·식물상 | | 식물플랑크톤(표, 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생물,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 10정점 | 4회 | 변경 |
| 6 | | 조간대생물 | 4정점 | | |



(그림 3.3-1) 환경질 현황조사지점도



(그림 3.3-2) 해양환경 현황조사지점도

3.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주민의견수렴 개요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도출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사업지역이 위치한 지자체(고홍군) 주관부서 및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등에 평가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신문공고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 기관과 협의를 실시토록 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 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2013.3.23., 환경부

나. 의견수렴계획

1) 주민의견수렴계획

가)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사업지역이 위치한 고흥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 고할 계획임

나) 평가서 초안 공람

- 사업지역이 위치한 고흥군 및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등에 평가서를 비치하여 주 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고흥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이용하여 공람기 간동안 평가서를 공람할 계획임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설명회 장소는 고흥 군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 ㅇ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2013.3.23., 환경부

2) 관계기관 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고흥군수, 전라남도지사, 영산 강유역환경청) 등에 보고서를 접수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3) 의견수렴결과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3항에 의거 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지자체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할 계획임

3.5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풍남항 정비공사 어항시설사업)

-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O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검토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
- 2. 토지이용 구상안
 - O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매립 및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용대안을 추가 선정·검토
- 3. 대 아
- 저서생물 훼손, 부유사확산 정도, 어업 영향 등을 지표로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대안을 선정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O 해양환경, 자연지형 등에 미치는 영향검토 및 영향저감을 위해 해양 환경(물리) 모니터링 자료를 충분히 확보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O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 6. 기타

2014. 10. 28.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풍남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O 평가대상지역이 항내에만 주로 국한되어 있는 바, 항외측으로 더욱 확대 하도록 하여야 함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현재의 사업계획은 항내 해수교환율을 급격하게 낮추어 장기적으로 항내 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외측 파제제 설치여부를 재검 토하는 대안검토가 필요함
-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외측 파제제 설치 규모 및 배치계획에 따른 다양한 대안에 대한 해수교 환율 실험 및 항내정온도 실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O 항내에 대한 많은 정점을 선정한 것은 바람직 함. 그러나 항외측은 조사 정점이 1지점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음. 본 사업으로 인한 해수유동변화 범위를 고려하여 항외측에 추가 정점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
- O 조석, 연속조류, 부유사 및 입도 관측을 실시하여야 함
-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O 해당사항없음
-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O 해당사항없음
-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2014. 10. 14.

(풍남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생산성이 높고 다양하며 어업권이 산재한 관계로 일부 항목의 대상지역 확대가 필요
- 2. 토지이용 구상안
 - O 없음
- 3. 대아
 - O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O 준설 등의 영향 파악을 위한 해양조사 정점의 확대가 필요함
 - 해양 수질 및 퇴적물 그리고 해양생물(동·식물 플랑크톤 등)은 전면해역에 방사형으로 3개정점 이상(해수욕장쪽 포함) 및 대조구 1개정점
 - 양식어업(미역, 파래 등)과 패류, 낙지류 등 마을어업(나잠)이 성행 중인 데 대부분 정착성인 관계로 부유사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 필요
 - 항 좌측에 조간대생물 1개정점 추가(해수욕장 방향)
 - 해수유통구 설치로 기존보다는 향상이 예상되나, 파제제 등의 영향으로 항내 해수교환율 변화가 예상되므로 내습파랑조건과 수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수교환율 사전진단 필요(해수교환율 실험은 입자추적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O 적정함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위주로 작성)
 - O 적정함

2014. 10 . 1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의견서

[풍남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기, 해양환경,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 O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어업 피해 등 환경 영향을 적극적으로 평가·반영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함

□심의의견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다 사료됨
- O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소음·진동, 대기질, 해양수질(해양생태계, 어업권 등) 등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을 철저히 하여 공사 혹은 운영 시 민원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특히,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해양생태계 및 어업 피해 등 환경 영향을 적극적으로 평가·반영하여야 함.
- O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사 시 소음, 비산먼지, 어업권 등 직접 영향권에 포함된 마을주민 및 어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2014. 10. 28.

(풍남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본 사업의 공사시와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환경 오염과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함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해양환경) 등 평가대상 지역은 적정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2.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O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 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 단, 평가준비서 제4장의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에서 조사항목 및 조사시점 (page 47)의 환경질 항목 중 해양수질분야의 조사횟수(조사지점 포함)를 4회로 선정 제시하였으나, 조사시기를 최소 계절별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김 가공 공장 운영기간(11월말~다음해 4월초)에는 배출수가 다량 배출되므로 그 운영 기간에는 조사횟수를 추가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사업지역(항내) 인근에는 김 가공공장이 다수 산재해 있고,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배출수와 부유물질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공고, 초안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로 적정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2014. 10. .

(풍남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O 적정함
-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O 해양조류흐름 및 유속변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예상지역 포함
-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O 주민의견 수렴 필요함
- 4.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O 의견없음
- 6. 기 타
 - O 풍남항 정비사업에 따른 어민 편의시설 등 주변인프라 구축

2014. 10. 14.

(풍남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O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 2.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
 - O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의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나, 본 사업은 『온실가스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 2013, 환경부』에 의거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이며, 공사시 지구 온난화 물질인 NO₂ 발생이 예측되는 바, 평가항목에 온실가스 분야 추가 또는 대기질 항목에 포함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 필요.
 - O 해양환경 항목은 신설 방파제 및 해수소통구 설치에 따른 항 내측 해수교환율 영향이 예상되므로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함.
 - O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동·삭물상 현황조사 지점이 대부분 항 내 측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환경상의 변화 여부 및 항 외측에 산재되어 있는 어업권에 대한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 외측에 대한 조사지점이 추가되어야 함. 또한, 해양동·식물상 조사항목 중 조간대생물의 경우 T-1, T-3 정점은 연성조간대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조간대 저서생물 조사시 상·중·하부로 구분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O 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을 실시하고,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4.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 O 사업계획규모가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약식평가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014. 10.